

본자료는 04.6.22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총괄정책과
		담당자	문재도 과장 이광민 사무관
		전화	2110-5513

<인터넷 : <http://www.mocie.go.kr> >

분산형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『구역전기사업제도』 시행

<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7. 1부터 시행>

□ 『구역전기사업제도』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6. 22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함

○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
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
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(발전·
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)임 (첨부 '구역전기사업 개요' 참조)

※ 구역전기사업자는 호텔, 오피스빌딩, 병원 등 수요지 인근에
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

○ 현재,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
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되어있으며,
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원칙의 예외에 해당

<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>

현행 발전사업자	구역전기사업자(신설)
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	전력을 생산,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(발전, 배전 및 전기판매 겸업)

○ 기대 효과 :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시행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 전원 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,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※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설비특성상 대형 발전소가 주로 해안에 위치한 반면, 전력수요의 40%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(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38%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송전)

□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일반용·주택용 전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,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

○ 금번 시행령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3만5천 kw이하(참고 : 현 롯데월드 자가열병합 발전설비규모 = 3만 5천kw)로 정함(시행령 제1조의2)

○ 한편,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구역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(시행령 제59조의2)

- 발전설비용량 15만kw 이하의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자 (참고 : 현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설비용량 = 12만7천kw)

- 발전설비용량 25만kw 이하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(참고 : 현 Sithe 이천열병합 발전설비용량 : 25만kw)

○ 또한, 구역전기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게 될 구역의 최대 전력수요의 70%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(시행령 제4조)

-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급구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(시행령 제19조제1항)

<개정 전기사업법시행령 주요 내용>

내용	전기사업법	시행령(안)	비고
구역전기사업자 설비용량 상한	협회의 구역전기사업자 ⇒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	3만5천kW 이하	현재 운영중인 자가열병합 및 직판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설비용량 ※
	집단에너지사업자 ⇒ 30만kW이하 (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)	지역난방 : 15만kW이하 산업단지 : 25만kW이하	
구역전기사업자 설비용량 비율	당해 공급구역 전력 수요의 50% 이상	당해 공급구역 전력 수요의 70% 이상	평균부하율 (평균전력/피크전력)

※ 잠실 롯데월드 : 3만5천kw,
인천공항에너지 : 12.7만kw, 싸이스(주) 이천열병합 : 25만kw

☐ 아울러, 설비용량 200kw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(시행령 제19조제3항)

○ 동사업자의 전력량계 설치비(1,000만원), 전력거래소 연회비(120만원) 등 전력시장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

※ 이는 지난 4. 12(월)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제1차 '기업에로조정 심의회'에서 이회범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선을 약속한 사항의 이행임

□ 나아가,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(기존 10종)에 숙박업소, 목욕장, 찜질방, 고시원, 산후조리원, 전화방, 수면방, 콜라텍 등 신종 영업(8종)을 추가함으로써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(시행령 제42조의3)

※ 기존 다중이용시설(10종) : 공연장, 영화상영관, 할인점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종합병원, 호텔, 국제회의시설, 카지노

□ 개정 전기사업법시행령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'04. 7. 1부터 시행될 예정

※ 다만, 전기안전검사관련 개정규정 중 숙박업·목욕장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,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

[참 고]

<구역전기사업의 개요>

